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: 2018.01.23

3. 주요 정정사항
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
- 부책임운용인력 삭제

-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

- 법 개정사항 반영

[규약]

항 목	변경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 외)	법 개정사항 반영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33조(이익 분배)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 이 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 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(생략) <신설>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분배한다. <단서 삭제>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대신의 평가이익
부 칙	-	-	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부칙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용 독 요약정보	उँठैंीπ	ଓ ଓ ପ	3 3 7
표. 집합투자기구	'의 무사정도		
[1] 투자전략			11-0
4. 운용전문인	부책임 운용인	부책임운용인력 : 박상건	<삭제>
력	_ 력 삭제 		
제2부. 집합투자	기구에 관한 사힝 '		
2. 집합투자기	변경에 따른	-	2018.01.23
구의 연혁	연혁 추가		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매매이익 및
			평가이익 유보)
			- 부책임운용인력 삭제
			-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
			- 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	부책임 운용인	가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
력	력 삭제	부책임운용인력 : 박상건	<삭제>
	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
		부책임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운용전문인력
		: 박상건(2016.07.13 ~ 현재)	: 박상건(2016.07.13 ~ 2018.01.22)
8. 집합투자기	법 개정사항	[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	[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
구의 투자대상	반영 및 모 펀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나. 투자제한	드 변경사항	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	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
	반영	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	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
		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	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
		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<u>(부도 등</u>	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<u>(부도 등으로 처</u>
		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	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
		<u>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</u> 는 그 투	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
		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	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
			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
		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다.
		-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	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
		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	-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
		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	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
		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	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
		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	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
		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	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
		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	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
		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	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
		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	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
		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	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
		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	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
		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	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
		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
		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	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
		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	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		느 그 나이기 바꿨히 나버티 2페인 이	나이크 이번서 되하트라그아 제10조제이			
		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	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8			
		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	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			
		하여야 합니다.	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			
			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			
			합니다			
14. 이익 배분	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			
및 과세에 관		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	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			
한 사항		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	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			
가. 이익 배분		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	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			
		으로 분배합니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</u>	분배합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</u>			
		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	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			
		<u>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	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			
			<u>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</u>			
			<u>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</u>			
			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			
			<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			
			보에 따른 유의사항>			
			<u>2017년 1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·분</u>			
			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			
			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			
			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			
			<u>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</u>			
			<u>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</u>			
			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			
			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			
			<u>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</u>			
			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			
			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			
			<u>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</u>			
			<u>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</u>			
			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			
			<u>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			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		
1. 투자자의 권	법 개정사항	라. 손해배상책임	라. 손해배상책임			
리에 관한 사	반영	③ 증권신고서 – - 않습니다.	③ 증권신고서 않습니다.			
항		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	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			
		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	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<u>법</u>			
		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	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			
		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	<u>말한다)</u>			
		정하는 인수인)				
L						